

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 거주성확인서

※ 해당되는 []에 √ 표를 합니다.

※ 해당 지침서식은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에 한하여 사용가능합니다.

1. 신청인의 인적사항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|
| 성명 (Applicant) | 한글(KOREAN) | | 영문(ENGLISH) | |
| 주소 | | | | |
| 내국인 | 주민등록번호 | | | |
| 외국인 (해외교포) | 여권번호 | | 국적 | |

2. 거주자 판정기준

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인 경우 ① 번표를, 그렇지 않은 경우 ② 번표 이용

①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인 경우

| | 항 목 | 예(YES) | 아니오(NO) |
|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|
| 국민 | ⓐ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까? | | |
| | ⓑ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? | | |
| | ⓒ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습니까?(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) | | |
| 외국인 | ⓓ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·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입니까? | | |
| | 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입니까? | | |
| | ⓕ 거주하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입니까? | | |
| 국민 또는 외국인 | ⓖ 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」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의 구성원·군속·초청계약자입니까? | | |

□ 판정방법 : ① 번표에 의한 판정 기준 작성 결과 상기 항목 중 한가지라도 “예(YES)”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비거주자**로 판정하며, 모두 “아니오(NO)”로 표시된 경우에는 **거주자**로 판정
거주자·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함

※ 영업활동 여부 확인은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(체재기간) 확인은 출입국사실증명서 (주민센터, 정부24 등에서 발급가능), 여권 등으로 확인 가능



②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

| 항 목 | | 예(YES) | 아니오(NO) |
|-----|--|--------|---------|
| 국민 | ⑦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습니까? | | |
| | ⑧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 중입니까? | | |
| 외국인 | ⑨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까? | | |
| | ⑩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습니까? | | |

□ 판정방법 : ② 번표에 의한 판정 기준 작성 결과 상기 항목 중 한가지라도 “예(YES)”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거주자**로 판정하며, 모두 “아니오(NO)”로 표시된 경우에는 **비거주자**로 판정
거주자·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함

※ 영업활동 여부 확인은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(체재기간) 확인은 출입국사실증명서 (주민센터, 정부24 등에서 발급가능), 여권 등으로 확인 가능

3. 거주성 판정결과 :

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거래를 함에 있어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

비거주자인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관련 안내

-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“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” 또는 “예금등 자금출처 확인서”를 **외국환은행에 제출한 시점(외국환은행의 확인시점)에 비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.** 해당 자금출처확인서의 한도 소진 시까지는 고객님의 거주성에 대한 판정이 유지됩니다.(「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」제3장 제1절 제24호)

■ 비거주자 판정기준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재외동포인 영주권자 | 가.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.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.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. (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) 라. 그 밖에 영업양태,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|
| 재외동포인 시민권자 (외국국적동포 등 포함) | 가.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·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.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. 거주하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|

■ 비거주자 입증서류 (다음 중 택1)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영업활동 입증서류 (영주권자만 해당) | 해외 영업활동 입증서류 (ex)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 |
| 체류기간 입증서류 | 출입국사실증명 (발급기관: 정부24, 출입국관리사무소, 주민센터 등) |
| 거주성 확인서 (지침서식 제3-3호) |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상기서류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 가능 |

- 국민인 거주자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이 **변동된 영주권자가 자본거래(해외직접투자, 해외부동산 취득 등)** 사유로 송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**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**하여야 하며, (「외국환거래규정」제4-2조 제2항) **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및 제9장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**하여야 합니다. 해당 사유로 송금 시에는 기등록된 자금출처확인서의 한도금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. (향후 비거주자로 변동되어 “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”로 송금 시 잔여한도 차감)
- 동 서식은 25. 2. 10. 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에 따른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절차에 대한 이해를 돋기위한 안내문입니다.

